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2. 9. 16(금) 10:00

제23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#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(문화환경국 소관)



**복 지 건 설 위 원 회**

전문위원 추병수

#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233호
- 나. 제 출 자 : 엄셋별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2. 9. 6.
- 라. 회부일자 : 2022. 9. 6.

## 2. 개정이유

상임이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상임이사인 대표이사가 재단을 대표하도록 하여 재단의 대표성을 명확히 하고 책임경영과 전문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확히 함(안 제7조제1항)
- 나.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비롯한 선임직 이사의 임명방식에 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제2항 및 제7조제5항)
- 다. 대표이사의 직무를 신설함(안 제8조제2항)
- 라. 직원의 임면 사항을 정함(안 제11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19조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, 제15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개정 이유

본 개정조례안은 상임이사와 관련된 규정을 대표이사로 변경하여 대표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재단의 책임 경영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원발의 되었음

### 나. 주요 내용

- 1)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확히 함(안 제7조제1항)
- 2)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비롯한 선임직 이사의 임명방식에 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제2항 및 제7조제5항)
- 3) 대표이사의 직무를 신설함(안 제8조제2항)
- 4) 직원의 임면 사항을 정함(안 제11조)

### 다. 검토의견

#### ○ 현 재단 운영의 문제점

- ▶ 임원의 직무(조례 제8조)
  -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, 이사장은 무보수 비상근자로서 재단 업무 전반을 책임지고 지휘·감독할 수 없는 구조임.
  - 대표이사를 이사장의 보좌역할로 규정하고 있으나, 대표이사는 전문 예술경영인의 상근 근무자로서 실질적으로 재단을 대표하여 기관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

구분	이사장	대표이사
직무	• 재단을 대표하며,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·감독 • 등기상 대표권 소유자 • 이사회 의장	• 이사장을 보좌하여, 재단의 업무를 총괄 • 이사회 이사
임명방법	• 이사회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	•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으로 구청장이 임명
자격	•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	• 문화예술 분야 및 경영분야에 전문성을 겸한 사람
근무형태	• 비상근, 무보수	• 상근, 보수
임기	• 2년	• 2년

- ▶ 비상근자 이사장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운영 발생
  - 비상근 이사장으로 인하여 행정 처리 및 주요 결재 상의 부재 등 문제점 발생
- ▶ 위와 같이 재단 운영에 있어 비상근 이사장 및 대표이사의 혼재로 대표권의 불명확성 및 책임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

## ○ 이사장 및 대표이사의 역할 구분

- ▶ 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은 출자출연기관이 임원과 관련하여,
  - “출자출연기관의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(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. 이하 조에서 같다.)를 둔다...” 라고만 규정하고 있고(제9조1항)
  - 시행령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, 개정안에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두고, 이사장에게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지위를, 대표이사에게는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,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.

- 본 개정안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의 역할을 구분하여 대표이사에게 대표권을 명확히 하고 재단 운영에 권한과 책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 관계법령

## □ 「지역문화진흥법」

[시행 2022. 7. 19.] [법률 제18780호, 2022. 1. 18., 일부개정]

제19조(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·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,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0. 12. 10.] [법률 제17389호, 2020. 6. 9., 일부개정]

제9조(임원) ① 출자·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(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둔다. 다만,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·출연 기관별 형태,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.

②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(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)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.

③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
2.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
3.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

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, 그 출자·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⑤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·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. 이 경우 감사가 출자·출연 기관을 대표한다.

**제15조(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)** 출자·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,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.